

『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통합방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 하고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- 현행 : 10명 이상 20명 이내
 - 개정 : 15명 이상 25명 이내
-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구미담당관을 당 연직 위원으로 추가(안 별표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통합방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구미담당관을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, 협의회 구성인원을 당초 “10명 이상 20명 이내”에서 “15명 이상 25명 이내”로 증원하여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